

- 비상구 폐쇄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 -

3대 불법행위 **불시 화재안전조사** 중점단속 안내

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,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대상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,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,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, 이는 **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 등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** 있습니다.

이에 **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 대상의 불시조사를 통한 3대 불법행위 원천 차단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으로,**

귀 대상에서는 **비상구 상시개방, 소방시설 정상유지,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**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.

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주요위반 사례

- ◆ 피난계단상 방화문 철거 행위 : 100만원 과태료 부과(소방시설법)
- ◆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: 200만원 과태료 부과(소방시설법)
- ◆ 소화전주변 불법주차 행위 : 4만원 벌칙금 부과(도로교통법)

【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】

- 단속범위 :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비상구 폐쇄 : 「소방시설법」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소방시설 차단
 - ▶ 「소방시설법」 제56조에 따른 5년(7년, 10년)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(7천만원, 10억원) 이하 벌금
 - ▶ 「소방시설법」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불법주차 : 「도로교통법」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

가 평 소 방 서 장